

14 🖥

15 🖥

낚시인 포획물(어획물)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안내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의거 어족자원보호를 위하여 낚시인 포획물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위반 시 : 과태료 80만원 (법적근거 :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, 제55조제1항제3호)

6 □ 관내 주요 대표어종

어 종 별	어 종 사 진	금지체장	금지기간
조피볼락 (우 릭)	0	23cm 이하	금지체장 측정방법
볼 락		15cm 이하	
감성 돔		20cm 이하	
돌 돔		24cm 이하	
넙치(광어)		21cm 이하	
민 어		33cm 이하	
농 어		30cm 이하	
붕 장 어		35cm 이하	
황 복		20cm 이하	
문치가자미 (도다리)		15cm	12.1 ~ 다음 해 1.31
쥐노래미		20cm 이하	11.1 ~ 12. 31 (단, 백령 및 대청해역은 11.15 ~ 12. 14)

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

제1조(목적) 낚시 관리 및 육성법(이하 "법" 이라 한다)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(선원포함)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낚시어선 숭객의 준수사항) 낚시어선 숭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3.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.
- 4.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가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5.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하는 미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6.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치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7. 해상에 분뇨, 폐기물, 유류 등의 각종쓰레기를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8. 인명의 안전에 위한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9.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 된 낚시도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기타 준수사항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.

- 1.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. 낚시승객은 낚시 중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3. 낚시승객은 안전을 위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선장은 승객이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 (3톤 미만 어선 의무착용)

제5조(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)

- ① 낚시어선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확인증 및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갑판실 외벽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② "생 략"

제6조(벌칙)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.